

언론중재위원회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토론회 종합자료집

- 일 시 : 2012. 11. 9.(금) 14:00 ~ 17:00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7호
- 주 제 : 공인 보도와 언론조정중재
- 주 최 : 언론중재위원회·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 진 행 -

□ 개회선언, 국민의례 ----- 14:00 ~ 14:05

□ 기조연설 ----- 14:05 ~ 14:10

▶ 언론중재위원회 권 성 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기식 원장

□ <제1세션> 공인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 정당한가? ---- 14:10 ~ 15:10

□ Coffee Break ----- 15:10 ~ 15:40

□ <제2세션> 공인 관련 사생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 -- 15:40 ~ 16:40

□ 강평 ----- 16:40 ~ 17:00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 부원장

- CONTENTS -

▶ 기초연설

언론중재위원회 권 성 위원장	5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기식 원장	8

<제1세션> 공인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 정당한가?

■ 쟁 점 1 : 공인의 범위	12
■ 쟁 점 2 : 혐의보도와 정정보도	19
■ 쟁 점 3 : 공인의 초상권	24
■ 보 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31

<제2세션> 공인 관련 사생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

■ 쟁 점 1 : 공적 관심사의 범위와 사생활 보호	35
■ 쟁 점 2 : 음성권 침해와 당사자 동의 유무	43
■ 쟁 점 3 : 과거 공인의 현재적 공인성	49
■ 쟁 점 4 : 손해배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	53
■ 보 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57

▶ 주요의견	60
--------------	----

▶ 강 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 부원장	64
------------------------------	----

기조연설

기조연설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 성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년에 세 차례씩 지방의 여러 도시를 돌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기존 토론회 방식을 다소 변경하여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공동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오늘은 이렇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균관대 로스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손기식 원장님께서 초대 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제가 축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성균관대 로스쿨은 전국의 여러 로스쿨 가운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나 취업률, 각종 모의재판·조정 등 경연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손기식 원장님과 여러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가길 바라며, 사회에 진출한 모든 졸업생들이 모범적인 법조인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로스쿨이 공동개최하는 형식의 토론회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로스쿨에도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올 해로 도입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와 관련하여, 저는 로스쿨 교육이 추상적인 이론 위주가 아닌,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로스쿨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원, 검찰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와 같은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오늘 토론회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에서 처리된 실제 조정사례를 통해 현장 중심의 법 이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의

미 있는 경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위원회에는 젊은 법학도들의 참신한 생각을 접하는 시간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뜻 깊은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언론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입니다. 흔히 분쟁해결 하면 법원에서의 재판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적 분쟁을 반드시 법원 재판으로만 해결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에 매우 훌륭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다소 부담스럽고, 복잡하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있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와 같이 언론분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그 예가 흔치 않습니다. 나라마다 자율규제기구인 '언론평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18일과 19일에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유럽언론평의회가 주최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중재위원들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 유럽언론평의회 내부에서도 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컨퍼런스 중간에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우리 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부러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도 기존의 자율규제기구인 PCC(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MSA(언론표준기구)라는 법정규제기구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한 발 앞서 법정기구를 설립하여 30년 넘게 성공적으로 운용해온 셈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우리 위원회와 같은 선진적인 언론분쟁 해결기구가 있었음을 새롭게 인식하고 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에서도 법원 송무 중심의 교육 외에도 조정,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있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성균관

대 법학전문대학원 손기식 원장님, 정재황 부원장님을 비롯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관계자 분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또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한 실무자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9.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손기식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에 저희 학교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성 위원장님께서서는 법조인 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로스쿨 출범 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대원장을 역임하신 바도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이러한 언론이 본래의 공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깨닫고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중재위원과 사무처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귀빈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요 쟁점은 언론보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공인'의 개념과 공인 여부가 불명확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공개범위 등입니다.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과 아울러 국가의 제4부로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때,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통제수단으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토론이 깊이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참가 학생 여러분은 아직 학생 신분이지만 이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고 또 언론이 적정하게 본래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더욱 더 발전하고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대학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언론중재위원회와 권성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로스쿨과 언론중재위원회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서로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이 함께 발전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9.

손 기 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제1세션>

공인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 정당한가?

■ 진 행 : 구윈화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변호사)

■ 패 널 : 김가람, 박태훈, 임유진, 홍진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문중(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 조사관, 변호사)

<제1세션> 공인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 정당한가?

▶ 토론개요

제1세션 토론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제 처리한 2012서울조정350·351 사건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본 사례는 이준석(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씨의 부친이자 H사 법정관리인인 신청인 이OO씨가 헤럴드경제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조정대상은 헤럴드경제 2012년 3월 16일자 19면 『이준석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제목의 기사이다.

해당 기사는 신청인이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주가조작 및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해 수백억 원을 포탈하는 등 무고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소액주주 대표 A의 주장과 신청인의 실명과 학력·경력 등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아들인 이준석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고소·고발된 사실조차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비난하는 일방의 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해 명예가 훼손당했음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아들은 이번 사건과 무관함에도 기사 제목 등에서 신청인이 이준석의 “부친”임을 강조하고 이준석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아들의 명예도 크게 훼손당했음을 주장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심리를 통해 고소·고발 내용은 일방의 주장일 수 있는데 수사기관의 결정이 나기 전 이를 상세히 보도한 것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양 당사자는 정정보도 및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본 토론회의 제1세션에서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공인의 범위, 혐의보도와 정정보도, 공인의 초상권 등에 대한 학생 패널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쟁 점 1 : 공인의 범위

- 공인의 가족도 공인으로 간주해 실명보도가 가능한가 -

박태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은 우리나라 판례가 사인인 경우에는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여 사인인 경우에는 범죄혐의 보도 시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로 공인인 경우에는 신원 공개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그런데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공인의 범주를 넓게 보아서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공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인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성' 개념을 적용해 공인을 공공성이 인정되는 인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즉 공공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혐의를 보도할 때 신원을 공개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려면 공공성의 범위를 위 판단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공성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사안에서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준석씨의 아버지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정치인과 같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외에는 공인으로 판단한 적이 거의 없다. 이처럼 공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기에 단지 공인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범죄혐의 보도 시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죄혐의 자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성을 갖기 어렵다. 공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고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내용의 보도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도내용은 법원에 의해 범죄성립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소·고발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이러한 기사로 인해 일반 독자들은 당사자가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공직자와 같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하여 신원 공개를 감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그 가족에게까지 적용한다면 그들에게 과도한 인격권 침해의 수인을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인의 가족에 대한 범죄혐의 보도 시 그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가 더 커서 위법하다고 본다.

그 외에 법정관리인의 직책으로 인해 신청인을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법정관리인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으로서 기업회생을 돕기 위해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익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대중이 관심을 갖는 일도 아니고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측면도 적기 때문에 법정관리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 역시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에서도 “의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에서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 그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도 일반 국민들이 피고들이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의사라는 직업은 어느 직업보다도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평범한 의사의 경우에는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기에 공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만약 신청인이 이준석씨의 아버지가 아닌 단순한 법정관리인이었다면, 기사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사 제목에서도 이준석씨의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볼 때, 법정관리인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 사건을 기사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판례에서는 공공성이라는 요건을 설명할 때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일 것과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법정관리인의 범죄혐의를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인의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법정관리인이라는 직책의 공익적인 측면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신청인을 공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임유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이 사건 신청인 이OO의 지위를 공인이나 공적 인물로 보지 않고 사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쟁점은 공인의 가족을 공인과 완전히 분리된 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공인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공인’이라는 개념 역시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유연한 개념이다.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의 가족을 공인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 역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을 공인으로 보기 위한 기준으로는 '공적 연관성'을 들 수 있다. 즉 공인의 가족에 관한 사항이 공인의 사회적 평가와 연결될 정도의 사건·사고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인정되므로, 사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아니라 '공적 연관성'을 갖는 공적 영역이 되는 것이다. 만약 신청인의 회사자금 포탈 및 부정행위 의혹으로 인한 고소 내용이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순히 신청인뿐 아니라, 그 자녀인 이준석 씨의 사회적 평가 역시 동반되는 공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적 연관성이 생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더 이상 사인이 아닌 확장된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법정관리인'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그는 여전히 공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법정관리인'이란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를 위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을 일컫기에, 좁은 의미에서 공무원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국가경제에 기한다는 임무의 공적 성격 및 사법기관이 임명한 담당자라는 의미에서 사회 일반인들에게 '법정관리인'은 공적 인물로 쉽게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지위를 공적 인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역시,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밀접한 규제를 받고 있는 회사나 상장된 주식회사 등의 법정관리인의 경우 공인 취급을 받는다.

그렇다면 공인의 지위를 갖는 신청인에 대한 사건 보도는 사인의 경우에 통용되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실명보도가 널리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실명을 사용하여 보도한 언론사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김가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피신청인 측에서는 신청인을 공인이라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신청인이 공인인 이준석씨의 부친이라는 점, 신청인이 법정관리인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떠나 정치인의 가족이 공인인지 여부, 법정관리인이 공인인지 여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설사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업이

나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는 그 사인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례에서는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기사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에 그치며, 결국 공익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판례가 그러하듯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위해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고, 공인인 법정관리인의 부실 관리는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기사를 살펴보면 'H사의 부실 경영 의혹' 그 자체 보다는 기사의 대부분을 신청인에게 할애하고 있다. 심지어 기사 제목이 "이준석 부친이 고소당한 까닭"이고, 기사에는 이준석씨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신청인과 이준석씨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취재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신청인이 이준석씨의 부친이 아닌 평범한 법정관리인이었다면 실명이 게재되었을지, 즉, 이 사건이 판례상으로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을 깨고 실명보도를 할 만한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이 든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 이해관계자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도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실명으로 보도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신청인이 이준석씨의 부친이기 때문일 것이다.

설령 이 사안이 공익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성명을 이니셜 등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포털사이트에 '정치인 A'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봐도 "유력 정치인 A 의원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현 의원에게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A 의원을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헤럴드경제, "1라운드는 3억원 행방 밝히기...2라운드는 거물급 소환?", 2012. 8. 7)" 등의 수많은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신청인은 이니셜 등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신청인과 이준석씨의 실명을 사용한 것은 헌법상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역시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이나 두문자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지기 때문에, 실명보도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커지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실명보도하기 위해 기울인 주의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은 고소인들 중 한 명인 최OO과의 한 차례의 전화통화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또한 H사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신청인이 법정관리인으로 부임한 날보다 이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았다. 게다가 기사에서 인용하였다는 최OO은 신청인에 대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즉 이 사안에서의 피신청인은 위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갖추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홍진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언론보도의 대상이 사인인 경우에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유OO의 이혼 보도 사건에서 대법원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공적 지위에 있지 않고(1998. 7. 14. 선고 96다17257)”라고 하였고 정신과 의사의 마약류 취급을 보도한 사건에서는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고(2007. 7. 12. 선고 2006다65620)”라고 설시하였다. 대법원이 이들 사건에서 실명보도가 위법하다고 한 것은 이들이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OO은 공인에 해당하므로 이니셜 처리 등의 익명보도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전적 의미에서 공인이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며,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인 공인(public person)이란 ‘공적

인 결정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전적 의미보다 더 광범위하다. 어느 쪽의 견해를 취하든 간에 신청인을 공인으로 판단하여 실명보도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신청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청인은 법정관리인으로 공인의 지위에 있다. 법정관리인이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법정관리기업의 최고경영자로, 대한민국 법원이 공인한 사람이므로 공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H사는 결코 작은 기업이 아니고 수천 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이러한 기업의 법정관리인이라면 일반인보다 언론 노출을 감수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H사는 시가총액이 천억 원에 육박했었고 4천여 명의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있다. 또한 H사 소액주주모임이 결성되어 있다는 것도 H사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갖는 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이 사건은 범죄혐의 보도로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 대법원 판례도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범인에 관한 정보 역시 보도에 필요하며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셋째, 이 기사가 보도된 당시의 이준석씨는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가정 환경 등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법정관리인 측면에서 공공의 관심을 수인해야 할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이준석씨의 부친이라는 점에서도 '준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 점 2 : 혐의보도와 정정보도

- 혐의나 의혹제기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가능성 검토 -

임유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 중 상당수가 '범죄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보도 대상이 된 개인이 공인에 해당될 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사인의 경우 범죄보도에 있어 '익명보도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인에 해당될 경우 '실명보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명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여지가 커지는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하다.

한편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 보도는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지 알려 준다.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까지 강구한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범죄 사건보도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범인에 관한 정보 역시 범죄 사실과 함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따라서 언론사 측에서는 보도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과 보도로 인한 공공성을 이익형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보도의 공공성은 특히 피신청인이 경제전문신문으로서 소액주주들의 입장 전달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보도의 큰 동기를 가진다.

주식회사 H사는 한 때 녹색주로 각광을 받던 자본금 270억원의 유망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부도가 나 상장폐지가 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전 대표이사 이OO씨는 고발이 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6월 2일 법정관리인들은 회생계획의 일환으로서 300대 1의 감

자산을 제시하였고 소액주주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감자안이 의미하는 바는 270억원의 자본금 회사가 7천만원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OO씨를 포함한 법정관리인들이 회사자금을 포탈하고 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인위적으로 자산을 감액한 후 향후 회사를 인수할 제3자에 대한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H사 소액주주 최씨의 인터넷 게시판 글 中>

따라서 소액주주 대표 최OO은 본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인식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게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와의 통화접촉을 통해 종국적으로 기사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파산회생절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매체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은 이 사건 보도의 '공공성'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신청인 측에서는 언론사가 보도 전에 고소·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 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3자의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외적 경과만 객관적으로 보도한다면 보도를 하는 측에서 고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언론사 기사가 고발 자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고발내용이 진실인지 쉽사리 의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신청인의 반론은 인정하기 어렵다.

김가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피신청인은 고소인과의 통화를 인용하여 의혹 제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에서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판시한 다른 판례(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에서는 '보도내용의 의미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보도내용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내용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제3자의 발언내용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비록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성질에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기사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거나 전후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표현한 경우에도 그러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함께 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이 기사가 인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여도 신문사를 통해 공표된 이상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인용의 대상인 최OO이 직접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마땅히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홍진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신청인 측에서는 신청인의 혐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취재가 선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H사의 법정관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기사의 초점은 신청인에게 '범죄 의혹이 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라는 것에 맞추

어져 있다. 따라서 기사의 신속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검찰에서 종국처분이 있거나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이처럼 신속하게 보도하는 기사였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오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적 주장과 고소인의 주장이 기사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즉 조정대상 기사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단순히 전달하고 있을 뿐,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최OO이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따옴표를 사용해 인용했을 뿐, 보도 내용이 반드시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다. 신청인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면에서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아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시인한 바 있다. 과연 이 보도가 진실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만일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 등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때 가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현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태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 보도에서 최OO의 인터뷰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이어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는 해당 기사의 일부분이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상 실질적으로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최OO의 인터뷰 내용이 문제된 것은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주장이 신청인에 대한 고소, 고발의 이유로서 범죄사실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고소 등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 등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소인에게 범죄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그러한 주장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범죄의 성립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기사화할 때는 고소인의 주장이나 그 이유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측의 반박 내용도 보도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측은 고소사실과 고소인의 인터뷰만 게재했을 뿐, 신청인 측 입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최OO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착각하여 신청인이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편견을 갖고 볼 수 있기에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후 최OO이 이 사건 기사가 문제되자 자신은 인터뷰 당시 기사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므로 그 사실이 진실하다고도 볼 수 없기에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향후 추후보도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추후보도청구를 위해 현실적으로 형사절차가 종결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에 신청인은 그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청인은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일반 독자들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신청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비해 신청인의 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기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혐의에 대한 공정성을 잃은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쟁 점 3 : 공인의 초상권

- 공인 가족의 범죄혐의 보도 시 해당 공인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가 -

박태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신청인이 기사에서 특정되었는지 여부이다. 특정이라는 것은 일반 독자를 기준으로 기사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이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 이준석씨는 기사의 주요 보도대상은 아니지만 기사의 제목 등을 통해 이준석씨의 아버지에 대한 기사임을 나타내고 있고, 사진까지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준석씨가 특정된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 기사의 표현이 이준석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 여기서 명예는 외적 명예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준석씨는 정치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청렴성과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는 이준석씨 아버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로서 이준석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반 독자들은 이준석씨의 아버지가 마치 범죄혐의가 많은 것처럼 인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이준석씨의 정치인으로서의 평가 역시 안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가족의 범죄사실에 해당 정치인이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쉽고, 비록 당사자가 이에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정치인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가족의 범죄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이준석씨 아버지에 대한 보도이지만, 그 보도내용이 범죄혐의에 대한 것이고 또한 편파적인 보도로 인하여 범죄혐의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간주되므로 정치인인 이준석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세 번째로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 내용은 편파적인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는지 의문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청인의 실명을 게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준석씨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범죄혐의자인 아버지의 신원을 밝힘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준석씨 아버지임을 밝힌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앞서 공인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청인은 공인이 아니고, 그의 신원을 밝히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공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로서는 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취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나아가 이 기사는 이준석씨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치인 이준석씨는 공적 인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의 관심을 끄는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혐의에 대한 편파적 보도로서 이준석씨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크기에, 이준석씨의 초상을 공표함으로써 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초상권도 인격권의 한 종류로서 공적 인물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공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성이 부족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김가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비록 이준석씨는 이 사건의 신청인이 아니지만 그가 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내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검토해 보

고자 한다. 이준석씨는 당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공인인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는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실시하여 공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적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대법원(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역시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다른 판례(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에서도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그리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제기라는 유형에 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만, 그러한 보도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는 결국 구체적인 기본권을 이익형량의 방법을 통해 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바, 과연 공인에 대한 보도의 범위 및 공직자의 인격권 보장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할 것이다.

기사를 보면 제목에서부터 이준석씨가 신청인과 부자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친을 사기, 횡령 등을 저지른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준석씨는 각종 포털기사의 댓글과 트위터 등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고, 정치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준석씨가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가사 정정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의 파급력은 허위 기사로 인한 파급력에 미치지 못한다. 허위 기사로 인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피신청인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준석씨를 굳이 강조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준석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준석씨는 명예훼손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준석씨는 초상권 침해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고,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이 포함된다. 이 사안의 경우 이준석씨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씨 본인이 아닌 부친의 범죄혐의라는 점, 게다가 그 혐의조차 오보였다는 점,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의 초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공표됨으로써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준석씨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안은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홍진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먼저 이준석씨에 대한 명예훼손 성부를 살펴본다. 신청인 측에서는 본건 기사로 인해 이준석씨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대중들도 고소, 고발된 사람은 이준석씨가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준석씨를 그토록 비난하였을까. 그것은 일반인의 관념으로도 아버지가 수백억 원을 포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득은 경제생활의 공동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준석씨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 본인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를 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다. 정치인의 가족구성원이 불법행

위로 회사 재산 수백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면 그 정치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정당한 알 권리가 있고 이준석씨는 공인으로서 이를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정치인 주변 인물의 비리 혐의에 대한 언론 보도에 정치인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이는 오히려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는데(1999. 6. 24. 97헌마265 결정),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며 공적 인물과 사인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준석씨는 공적 인물로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본 사안은 범죄혐의관련 기사이자 정치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공공성을 갖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준석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준석씨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인의 가족구성원이 회사 재산의 유용으로 수백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 정치인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관련 기사에 당사자의 사진을 게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이준석씨의 사생활을 담은 사적인 사진도 아니고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도 아니다. 초상권은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적인 것과 재산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청인 측도 여기서 초상권의 재산적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사생활 관련 인격권의 문제만이 있을 것이다. 한 때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는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사건 기사에서 게재한 사진은 공적인 자리에서 촬영되어 이미 여타 매체에서 공개 및 활용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준석씨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씨는 젊은 나이에 여당의 비대위원이 되어 당시에 언론매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글에서 '이준석'이라는 키워드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무려 이십만 육천장의 관련 사진이 검색된다. 이처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이준석씨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임유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기사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었는가, 기사에 사용된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혹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본 기사의 대상은 명백히 신청인 이OO으로 이준석씨는 신청인을 특정하기 위한 언급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부자간이라는 사실적 표현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가사 보도의 공공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명예훼손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청인 측에서 이준석씨의 피해 사항으로 트위터에서 비난글이 쇄도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판례는 공적인 인물 내지 스스로 공적인 비판대에 올라서서 명예훼손의 위험을 감수한 자의 경우 해당 표현이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TV 프로그램 출연 및 트위터 등 SNS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준석씨는 스스로 공적인 비판대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공적 인물이며, 따라서 이 보도 이후로 일반인들의 비난 등이 쏟아진다고 해서 바로 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씨의 초상이 공포된 점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 성부를 살펴본다. 현재의 언론관계 법률은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초상권은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 내용으로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이다.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표거절권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공적 또는 시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인물의 초상권은 개인의 초상이 본인의 승낙 없이 전파, 열람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본 사건의 보도 내용이 공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은 더욱 어렵다. 최근 신세계 정용진과 그 약혼녀 한OO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침해금지의 소에서 법원은 “상견례 회동과 같이 사적 영역에 있는 사진을 제외하고 이미 얼굴이 알려지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OO의 다른 사진의 게재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본 사안에 참고할 만한 판례의 입장이라 생각된다.

보 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 검토

김 문 중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 조사관, 변호사)

앞서 토론자들께서 각 쟁점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 실무상 경험과 개인적 의견을 토대로 보완해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쟁점에서 논의한 공인의 개념과 관련해, 공적인 인물이란 그 업적, 명성, 생활양식에 의하여 또는 일반 대중이 그의 인격, 행동 등에 관한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공적인 명사가 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아직까지 공인과 사인의 구별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례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TV 뉴스 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이 공인인지를 판단하면서, 판례는 공적 인물 못지않게 그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실시하면서 공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을 본 사안에 적용해 본다면, 단지 이준석씨 아버지라는 지위 또는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라는 측면에서 신청인을 공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정관리인이라는 지위로서는 공인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실명 공개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쟁점에서는 혐의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는 정정보도청구를 하려면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이를 언론이 공표한 이상,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고 있다. 본 사안에서 비록 언론사가 단순한 의혹제기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정정보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특히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신청인이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언론중재법에서는 추후보도청구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

우 신청인은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에서 이준석씨는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신분이므로 공인으로 인정되기 충분하다. 또한 아버지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보도로 인해 자신도 비난받을 수는 있겠지만, 연좌제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보도로 인해 이준석씨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이준석씨의 초상권 침해 성부를 보면, 판례는 공인의 경우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수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한계는 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 시사주간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을 김정일의 사진과 같이 게재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 또는 용공, 친북 인사'라는 등의 표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인의 사진을 공표한 경우까지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인의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본 사안에서 만약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가정한다면, 비록 이준석씨의 사진이 공개석상에서 촬영된 것이고 포털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준석씨의 초상권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제2세션>

공인 관련 사생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

■ **진행** : 구윈화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변호사)

■ **패널** : 박유빈, 안기문, 정재하, 정지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영(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 조사관)

<제2세션> 공인 관련 사생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

▶ 토론개요

제2세션 토론 역시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제 처리한 사건을 토대로 진행하되, 신청인들의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다.

본 사례는 합참의장으로 15년 전 전역한 신청인 1과 국내 대기업의 일본 동경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신청인 2(신청인 1의 딸)가 A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A 언론사는 『전 합참의장 딸과 일본 총리 아들 결혼설』 제목의 기사로 기자가 신청인 1과의 전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해, 신청인 1의 딸인 신청인 2가 일본 유학 중 現 일본 총리의 막내아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5월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최초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결혼설을 부정하는 취지의 신청인 1의 주장을 추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A 언론사의 보도 이후 주위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으로 사생활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음과 특히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신청인 2의 경우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가운데 일본 내 극우단체의 테러 위협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심리 중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취하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 토론회의 제2세션에서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공적 관심사의 범위와 사생활 보호, 음성권 침해와 당사자 동의 유무, 과거 공인의 현재적 공인성 등에 대한 학생 패널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쟁 점 1 : 공적 관심사의 범위와 사생활 보호

- 유명인의 결혼설 등 사생활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가 -

박 유 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우선 위법성 조각여부를 중심으로 해당 보도가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인지 검토해 본다.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승낙이 필요하고, 이러한 승낙 없이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언론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침해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된다.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판례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근거하여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및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고려가치 등을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그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의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신청인 1은 15년 전 합참의장을 지낸 인물로 현직에 있을 당시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미 15년 전에 퇴역하여 지금까지 일반인으로서 살아온 신청인 1이, 그러한 과거의 지위에 근거하여 아직도 공적 인물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서울중앙지법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에서는 한때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

당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해당 판례는 “원고는 1978년경부터 TV 텔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중략)”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한때 공적 인물이었던 자라 하더라도 그 지위에서 물러나 그 이후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만한 소지 없이 일반인으로서 생활하여 왔다면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15년 전에 퇴직한 고위공무원인 신청인 1은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딸의 결혼에 관한 사항이 갑자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일본과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보도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일본 총리의 아들이 한국의 일반 여성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 1에 대한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신청인 2는 모 기업의 일본 지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널리 공중에 알려진 ‘공적 인물’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결혼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신청인 2가 일본 총리의 아들과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독도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와 맞물려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바, 신청인 2의 결혼설 상대방이 공적 인물 또는 그에 준하는 자¹⁾라고 해서 신청인 2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그의 결혼에 대한 보도가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유명 가수 신해철과 전 미스코리아 출신 일반인 윤OO의 결혼 보

1) 일본 총리가 공적 인물임은 명백하나, 일본 총리의 아들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자세한 논의는 앞의 <제1세션> 토론내용 참조

도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신해철과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공적 인물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신해철의 결혼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윤OO의 실명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달리 신해철이 결혼할 상대가 바로 윤OO라는 것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서울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사안에서 신청인 2에 대한 결혼설 보도 역시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이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한 보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볼 여지가 없는 바, 위법성 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 2의 결혼설에 대한 보도가 위법한 보도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신청인 2의 아버지인 신청인 1과의 대화 내용 보도 또한 신청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공적 인물의 결혼은 그 인물의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의 성명과 초상, 경력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다면, 그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에 대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44370)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국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는 일본 총리 자녀의 결혼이 국내에서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던 적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일본 총리 아들의 결혼 상대가 한국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결혼설에 대한 보도 또한 일본 총리의 아들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1이 전 합참의장으로서 신청인 2의 아버지라는 사실 및 신청인 2의 결혼설에 대한 신청인 1의 견해에 대한 피신청인 측의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의 흥미 내지 호기심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 지 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공인의 결혼설 보도 및 열애설 보도는 그것이 사적 영역에 관한 사안임에

도 불구하고 공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간 충돌을 가져온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결혼설 보도는 허위성, 추측성 보도인 경우가 많다. 이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결혼설에 대한 허위보도나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이 아니라, 결혼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그 후속보도로서 결혼설의 진위에 대한 신청인 측 입장을 묻는 보도, 즉 반박 보도 및 정정 보도로서 진실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보도가 진실함을 전제로 신청인 2에 대한 결혼설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언론기관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일 때에는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서울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은 '공적 인물(공인)'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 간 차이이다. 공적 인물이란 그의 지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또는 인기 등에 의해 명사가 된 자를 의미한다. 이런 공적 인물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기 기간과 퇴임 후 일정기간의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은퇴 후 일정기간의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은 공적 인물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공적 인물은 당연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만, 공적 인물이 아닌 통상인이 어떤 사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 사건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의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사건과의 관련 범위 내에서'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판례는 이에 대해 위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적 인물인 가수 신해철의 결혼설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신해철에 대해서는 공적 인물로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또 다른 원고 윤OO에 대해서는 신해철과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공적 인물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 다른 공적 인물인 신세계 그룹 부회장인 정용진의 결혼설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44370 판결)에서는 원고 한OO의 경우 원고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 정용진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결혼예정 사실 등에 관한 일반적인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에 있어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있다고 볼 때 위 전자의 판례는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판단해보아야 하였을 것이다.

본 사안으로 돌아와 신청인 2가 공인인 일본 총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만으로 공적 인물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청인 2의 공적 지위 획득 여부와 무관하게 본 결혼은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의 총리 아들과의 결혼이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 결혼 여부가 일반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결혼의 범위 내에서는 신청인 2 또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신청인 2의 기본적인 정보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청인 2의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이익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익형량에 대한 판례의 기준에 따라 본 보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면, 보통 일반적인 결혼설 보도는 사적 영역의 것으로 사생활 침해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국민 일반의 호기심 충족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최초로 결혼설을 보도한 언론으로 인해 신청인 2가 일본 현지에서 테러위협을 받는 등 결혼설의 진위 여부가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타 결혼설 보도에 비해 중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실보도, 신속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은 위 결혼설로 인하여 신청인 2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된다 하

더라도 이를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

침해방법의 상당성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은 앞서 언급한 정용진 판례에서 언론이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부분, 즉 밥 먹는 사진, 신혼집 사진과 같은 파파라치 사진을 열장 가까이 게재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한 점에 있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결혼 예정 사실 등 일반적인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원고들의 사생활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어,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아 원고 측에서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사건의 결혼설 보도 또한 둘의 데이트 장면이나 신청인 2의 은밀한 개인 생활을 파파라치 형식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신청인 2에 대한 성명, 학력 등 기본적인 정보와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도에 그치고 있어 보도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살펴보건대, 본 보도로 인한 신청인 측 피해의 내용이 신청인 2의 이름 및 학력 등 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에 그치고 있고, 이는 이미 타 방송사의 보도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상위에 며칠 간 랭크되어 있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던 것이라는 점에서 본 보도로 발생한 피해는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종합 편성채널로서 2012년 10월 4일 시청률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집계결과 시청률이 0.795%에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파급력 또한 크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타 언론의 최초 보도와 구분된 확대보도로써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 측에 피해를 준 바가 적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 손해배상의 핵심으로 신청인 측에서 주장하는 결혼설 보도로 인한 테러위협은 한일관계의 정세에 기인한 것이지 최초 보도도 아닌 정정보도로서의 본 보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 및 침해행위의 방법의 상당성과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중대성을 비교형량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커 본 언론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

안 기 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피신청인 보도 이전에 신청인의 결혼설이 여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응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본 사건은 공적 인물인 일본총리와 그의 아들에 관한 보도에서 부가적으로 다뤄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반인인 신청인의 신변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뤄졌다는데 그 위법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2의 실명과 학교 및 가족관계사항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현재 그는 일본 현지에서 우익 단체의 테러위협으로 인한 신변 안전과 보안 문제로 사생활침해를 넘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이어 나가고 있다.

앞서 정용진 부회장의 결혼설에 관한 보도의 경우는 공적 인물인 정 부회장 본인에 대한 보도였다는 점에서 본 사안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 법원도 해당 판례에서 공인과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설시하고 있는 바, 아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본 사안에서 평범한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결혼설을 보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본 사건과 같이 결혼설 보도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허위추측성 보도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정서적이고 내밀한 감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타인의 결혼에 관한 보도는 그 자체로 일면 허위보도의 가능성을 항상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 혹은 파경이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허위추측성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언론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래와 같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혼설이 지니는 이러한 특수성을 기초로 당사자들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법적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재 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본 사건의 결혼보도는 다른 결혼설 보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즉 한국 및 동아시아권에서 결혼 특히 사회지도층의 혼인이 가지는 특수한 의미를 숙고해 봐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는 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엄격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미 각국에서 논의되어 온 문제인데 반하여, 역사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혼인은 단순한 두 남녀의 개인적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 간의 영속적인 결합을 의미하였다. 특히, 권력층 자제들 간의 혼사는 집안의 결연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정치행위였으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권력가 또는 재벌가 사이의 혼사를 통하여 권력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유무형의 이득을 주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국사회에서 혼인이 가지는 이러한 특수성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풍토 하에서 프라이버시권 이론을 발전시켜온 구미각국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결혼설 보도에 있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해볼 때 한국의 전직 합참의장과 현 일본총리 사이의 혼사는 단순히 국내 권력층 간의 혼사를 넘어서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증진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공적 관심사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보도의 중요성이 더욱 더해진다고 하겠다.

본 사안의 결혼설이 허위추측성 보도였다는 데에 대하여는, 결혼설 보도 자체의 확인이 어려운 언론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결혼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다소 불확실, 불분명하더라도 신속히 보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된 논란은 신청인이 촉발한 것이 아니다. 피신청인은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에 더해, 보도의 정확성과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첨가한 것이다. 피신청인의 본 사건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를 접하는 대중들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신청인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쟁 점 2 : 음성권 침해와 당사자 동의 유무

- 취재 시 기자의 신분과 소속을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가 -

정 재 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화를 시작함에 앞서 본 언론사 소속이라는 사실과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더욱이 당시 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한 다른 언론사의 최초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었으므로 후속보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의 통화 내용이 기사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또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신청인이 자신의 음성이 방송되는 것을 꺼려하였다면 최소한 음성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음성변조 등의 방법을 취하여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어야 하나,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 점에서 통화녹음의 공개에 대한 신청인의 묵시적인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결혼설의 당사자인 신청인으로서의 최초의 다른 언론보도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최초 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본 사건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권 보장과 보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시청자도 당사자인 신청인의 생생한 육성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신청인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였기에 본 사건의 피신청인은 그에 필요한 창구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

안 기 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최근 시청률과 같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사실을 언론사가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

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프라이버시를 공개해야할 수인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인의 경우, 이러한 인격권 침해 보도문제는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숫자의 연예인들이 언론사의 일방적 보도행태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나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 일간신문이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전혀 무관한 일반인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인격적 침해를 가하는 등 이제 위법보도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가 진행됨으로써 보도의 대상자가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나친 특종경쟁에 사로잡힌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먼저 공표하고 사후에 문제가 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행태가 그 원인이 된 사건이다. 이에 본 보도사건을 실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보도가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법보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과연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는 것만으로 그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되는 것에 당사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것이다. 공적인 관심사 여부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본 사안과 같은 결혼설 보도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영역을 다룬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 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사화 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기자로서도 보도에 보다 신중함을 기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해 보았을 때,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단지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것만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원은 과거 유명앵커였던 백지연 씨의 이혼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보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보도였다는 취지의 하급심판결의 설시문구를 통해 이러한 프라이버시 관련 보도에 있어서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혹은 그와 동일한 수준의 묵시적 동의를 확인할 것을 주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본 사건의 기사화에 있어서 기자는 본인 혹은 최소한 본인의 아버지인 신청인 1의 명시적인 동의여부를 확인하였어야만 한다. 위 판례에서 기자는 당사자와의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 기사화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항변한 바 있으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 보도에서 자신의 소속 언론사와 기자신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동의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 2의 경우에는 유명앵커였던 백지연 씨와 달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은 기자의 보도 과정상 위법성은 보다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비밀녹음을 통해서 보도영상에 신청인 1의 음성을 그대로 공개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기관, 특히 방송매체를 운영하는 당사자가 특정인과 전화로 인터뷰하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내보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즉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말을 비밀녹음하거나, 이를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일응 위법성을 추정 받게 된다.²⁾ 본 사건에서 신청인 1이 자신의 음성을 그대로 공개해도 좋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음은 명확하고, 우리 법원도 동의 없이 녹음한 전화통화를 음성변조 처리 없이 방송한 경우 음성권 침해를 인정(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51935)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취재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음성을 내보낸 것은 명확히 당사자에 대한 음성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2) 박용상, ‘언론과 개인 법익 -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 제도’, 조선일보사(1997), 92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는 모두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 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관행이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종합할 수 있으며, 특히 사생활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 사건 보도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고려하는 기자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 지 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이익형량의 기준이 모호하여 본 보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힘들다 하더라도 신청인 1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프라이버시권 포기에 해당한다.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묵시적 동의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현재 법원은 대체로 묵시적 동의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앞서 사례로 든 백지연 씨의 전화인터뷰를 허락 없이 보도한 신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4112 판결)에서 법원은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 언론사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하지만 묵시적 동의의 인정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본 사안은 위 묵시적 동의를 부정한 판례의 점과 두 가지 점에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관련 판례의 해당 기자는 백지연 씨에 대한 보도가 기사화되기 4개월 전부터 백지연의 근황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백지연과 전화를 주고 받는 등 친분이 있어 취재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백지연은 기자와의 대화내용이 언론을 통해 신문 기사화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본 사안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측에서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한 시점이 이미 타 언론사에 의하여 최초로 위 결혼설 보도가 실명으로 이루어져서 신청인 1, 2의 이름이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는 등 이 사건 결혼설이 사회적으로 가

장 관심을 받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신청인 1로서는 전화인터뷰에 앞서 기자의 소속과 신분을 밝힘으로써 신청인의 입장 및 사실을 밝히는 이 사건 전화인터뷰 내용이 방송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백지연 판례에서는 백지연 측이 통화할 때마다 자신이 법적 대응을 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통화내용을 기사화 하지 말아 줄 것을 기자에게 당부하는 등 인터뷰 내용의 기사화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이 전화인터뷰 내용이 방송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연하자면 기자임을 밝혔을 때 신청인이 전화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결혼설의 진실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 답변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또 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고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바, 이는 백지연 판례에서 거듭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과 현저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은 기자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전화인터뷰의 방송 송출에 대한 신청인의 높은 예견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재 후 방송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판례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으므로, 언론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게을리 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의정부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 6848 판결이 있고, 만약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이 있다. 본 사안을 위 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판단해보건대, 피신청인 측 입장에서는 본 보도가 잘못된 결혼설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반박보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최초 결혼설 보도를 바로잡음으로써 오히려 신청인 측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위 전화인터뷰를 비공개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또한 본 보도는 신청인 측의 전화인터뷰에 언론사의

입장을 더하거나 주관적인 평가를 더함이 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보도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인터뷰 당시의 예상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아가 묵시적 동의로 인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공인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여 호화 결혼식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쓴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에서 묵시적 동의는 결혼식 보도와 관련해서만 한 것이고, 촬영한 사진 또는 화면을 향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상관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한다거나 그 공표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는 반대해석해보자면 공인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한 것은 결혼식 보도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장면을 예상한 대로 결혼식 보도에 관해서만 사용하는 한 묵시적 동의에 의해 초상권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판례의 태도는 본 사안에도 적용되어 전화인터뷰를 하여 그 내용을 예상한 대로 결혼식 보도에 관해서만 사용하는 한 묵시적 동의에 의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묵시적 동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보도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은 상황과 현격히 다른 목적으로 방송됨으로써 취재원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며, 취재 기자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의 내용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도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부정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일 것이다.

쟁 점 3 : 과거 공인의 현재적 공인성

- 과거 공인이었던 사람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수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안 기 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본 사례의 경우 언론사가 신청인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그의 사진을 공개하였으므로, 이러한 보도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신청인 2의 결혼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신청인 1의 주장에 관한 보도로, 그 보도의 내용 등을 전달하는 데에 신청인 1의 사진이 게재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동의 받지 못한 초상권 및 성명권의 공개로 인한 위법한 보도의 경우 그 위법성 조각은 언론기관이 대상자의 실명과 초상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서울동부지법 2009. 11. 24. 선고 2008가단 62527 참조), 먼저 원칙적으로 본 사건과 같이 대상자의 초상 공개가 필요한 보도가 아님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은 방송보도에 필요한 한도를 넘고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써 위법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보도된 사진이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인명록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점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없었다고 보는 시각은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인 1이 현재도 활발하게 공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사진을 손쉽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었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해 부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지만, 신청인 1은 15년 전에 퇴역해 현재 언론매체에 공개될만한 직위나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신청인 1이 과연 초상권이 공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이른바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흔히 우리가 공적 인물로 평가할 때 고려하는 것은 첫째 지속적인 뉴스 가치가 있는 지위에 있는 인물이거나, 둘째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1은 공적 인물의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적 인물이 아닌 인물의 초상을 공개함에 있어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동일한 사진이 과거 인명록에 공개되어 있고, 명예훼손과 결부된 보도내용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언론매체의 공개적인 초상 이용이 적법하였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언론사의 보도행태로 인하여 프라이버시와 음성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대중에 대한 각인성 높은 영상을 위하여 신중한 고려 없이 당사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언론사의 오랜 관행이 본 사건 초상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시내에서 보행 중인 시민의 초상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한 사건들에서 해당 언론사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부여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가 다수 있다. 즉 중요한 것은 공적 인물이 아닌 당사자의 초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보도에서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사안에서도 해당 인명록 사진은 신청인 1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자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조사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진이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어서 본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진이 일반대중에게 당사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상권 침해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도에 거론된 내용이나 당사자의 초상, 음성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안 역시 대중들에게 관심사가 높은 가십거리로 인식됨으로써 신청인의 초상이 급격하게 확대 재생산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언론사가 보도지침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대법원이 초상권의 개념에 대해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

극적인 권리라는 점을 규정(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참조)한 것과 같이 능동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민감한 프라이버시 사항을 보도하면서 실명과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여 그 피해를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가 취해야 할 태도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보도행태라고 할 것이다.

정 재 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본 사안의 보도에서는 이미 촬영된 신청인 1의 사진을 보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초상의 공표거절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 1이 공인 또는 시사적 인물에 해당하여,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³⁾가 있다. 누가 공인인가 또 어디까지 공인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치인, 주요 공직자, 공기업 및 대기업 경영자 등을 공인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데 합참의장은 대한민국의 군인 중 서열 1위에 해당하는 보직으로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공인이다. 또한 고위 공직자는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각종 예우를 받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재직 당시의 경력을 바탕으로 퇴임 후에도 정치인, 기업체 임원, 대학 교원 등 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직책을 언제든지 맡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에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과 같은 전직 합참의장도 현직만큼은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인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나아가 신청인이 이른바 '상대적 시사인물'에 해당하는지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독일에서는 유명인의 초상권은 그들에 대한 일반 공중의 관심을 고

3)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3438 결정(이 사건은 재벌그룹의 총수인 신청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평전의 표지 및 광고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한 행위에 대해 신청인이 그 평전의 제작·판매 및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한 것이다) 및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94카합 9230 판결 등에서 유명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합13495 판결의 사안처럼 그 유명인이 보도의 내용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인의 초상을 보도에 이용한 경우라든가, 그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책자 또는 기사에서 그 유명인의 사진을 게재한 경우 등에는 아무리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유명인을 해석상 정치인, 예술가, 유명배우, 스포츠 스타 등의 절대적 시사인물(Absolute Personen der Zeitgeschichte)과 예컨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범죄의 용의자와 같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정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진 상대적 시사인물(Relative Person der Zeitgeschichte)로 나눌 수 있고,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과 공중의 관심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보도 당시 다른 언론사의 최초 보도로 인하여 결혼설의 당사자인 신청인 2뿐만 아니라 전직 합참의장인 신청인 1에 대하여도 대중들의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고, 신청인 1은 이미 국가의 주요공직을 맡으면서 그 익명성을 제한받고 있었으므로 초상권이 제한되는 상대적 시사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안의 보도에 사용된 사진은 전직 합참의장인 신청인 1의 증명사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역대 합참의장'을 검색해보면 1대부터 36대까지 합참의장의 증명사진 및 출생, 학력, 경력, 관련 정보 등 기본적인 인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인 1의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아도 신청인 1의 증명사진을 아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널리 공개된 정보라 할 수 있다. 또한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본 사례의 신청인 사진 이용에 있어서 방송의 내용 중에는 신청인 1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로지 신청인 1의 딸과 관련한 결혼설에 대한 반박 인터뷰에 관한 보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업적으로 악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쟁 점 4 : 손해배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

- 보도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

박 유 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 측 입장)

이 사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3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보도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언론사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실 확인, 당사자의 동의 등 인격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전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무책임한 보도가 횡행하고 있으며, 언론사가 거대 권력을 가지고 사전적 구제수단의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언론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언론이 가지는 파급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 뉴스 등에 의하여 언론보도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관통하며, 그 보도에 대한 의견 개진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빠른 시간에 해당 사안에 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발언을 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여대생이나 학력을 위조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쓴 허위보도 때문에 음악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가수 타블로처럼 언론보도에 의하여 사회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연기자 고 최진실의 경우에는 불법 사채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보도로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기도 했다.⁴⁾

본 사안의 신청인 1은 이 사건 보도로 사생활의 평온이 깨어지고 가정사

4) 이 사건에서 인터넷 메신저로 고 최진실이 불법사채에 돈을 투자하였다는 소문을 최초 유포한 모 증권회사 직원만이 벌금형에 처해졌을 뿐, 그 소문을 확대 재생산한 언론사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가 대중의 화젯거리가 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신청인 2는 일본 극우 단체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일본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들이 입은 손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전적 손해배상의 청구이다. 그렇다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인정한 3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은 신청인들의 피해의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독점 자본주의의 성숙과 함께 황색언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언론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보도금지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언론에 의한 피해의 사후적 구제수단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사전적 규제수단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 등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보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서 무책임한 언론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상징적인 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였던 기존의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태도는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 보도를 자행하는 언론기관의 비도덕적 보도관행을 야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의 구제가 가능한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 적법하며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수 있는 실질적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제7조)하고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18조 제2항),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23조). 또한 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배상액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

회는 1981년 설립된 이래로 언론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의 피해 구제를 담당하여 왔고 성공적인 ADR기관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향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언론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보도관행이 근절되고 그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 재 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신청인 측 입장)

신청인 측 주장대로 본 사건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침해가 있다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에 대한 법원 판례는 보도와 관련된 사정(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 경위와 목적, 내용의 진실성 및 공익성의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 측 사정(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지명도,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및 언론사 측 사정(잡지 또는 신문의 발행부수, 공신력 등)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우선 보도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 측 결혼설과 관련한 논란은 피신청인의 본 사건 보도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 아니다. 피신청인은 타 언론사가 최초로 보도한 내용에 신청인과의 전화인터뷰를 더하여 방송한 것이고, 인터뷰의 내용도 결혼설과 함께 이를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임의적인 편집 없이 객관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보도의 내용에 신청인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신청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보도 이후의 정황을 보면, 피신청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 덕분에 신청인은 자신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었고, 대중의 여론도 결혼설과 이를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장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신청인은 본 사건 보도 후 결혼설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평균 시청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서 메이저 공중파 방송사에 비하여 여론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매체이기 때문에 설령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확대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폭은 미미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이 결혼설을 적극 부인하는 신청인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한 덕분에 결

혼설은 수일 내에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한편, 현재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신청인 2는 본 사건 보도로 인하여 일본의 우익단체에게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설의 내용대로 한국의 전직 합참의장의 딸과 현 일본 총리의 아들 간의 혼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개인과 집안 간의 경사를 넘어 양국 간의 비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일본의 일부 우익단체가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은 도외시한 채 결혼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고 신변의 위협까지 가하는 것은 그들이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극우 민족주의 파시즘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 피신청인의 보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보도와 일본 우익단체의 위협으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

나아가 그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례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인터뷰를 회피한 사람을 촬영하고 방영한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성폭행 피해자의 CCTV 모습을 방영한 경우, 납치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CCTV 모습을 방영한 경우, 동물사육 기사에 애완동물 가게 운영자 사진을 게재한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척결대회 무산 보도 시 시설근무자 사진을 게재한 경우 각 200만원, 이혼의 위기를 넘긴 노부부 사연 소개 시 사진을 방영하고 불륜 당사자로 묘사한 경우 250만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100만원~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봐도 명예훼손적인 보도 없이 신청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 창구를 마련한 본 사건 보도에 대하여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용한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있다.

보 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박 은 영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 조사관)

우선 과거 공인이었던 사람이 현재적 관점에서도 공인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2011가합27092 판결에서 원고는 용산구 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재직 당시 지자체의 세금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용산구 구의원 임기 만료 후 7년간 사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해당 보도가 비록 공익성이 있다 할지라도 굳이 원고의 초상을 게재할 필요가 없었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제2세션 토론사례에서 신청인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은 전역한 후 15년간 사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제2세션 토론에서 가장 논의가 많았던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련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비록 기자가 신청인에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자신의 음성이나 초상이 방송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도 되겠는가?'라는 명시적 질의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 동의 여부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두 개의 조정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첫 사례의 신청인은 언론사의 인터뷰에는 응했지만 자신의 초상이 방송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언론사 측에서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방송용 ENG 카메라를 사용해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진행했기에 당연히 신청인의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방송에 대한 취재원의 명시적 동의 필요성을 인정, 일정액의 손해배상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공개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송에 대한 동의까지 획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언론사가 취재원에게 "해당 내용과 당신의 초상 등을 방송해도 되겠는가?"라는 명시적 질의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중재부는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취재원이 인터뷰뿐 아니라 그 내용이 방송되는 것에도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며, 취재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동의한 초상 등을 보도한 경우는 '동의한 범위 외에 초상을 사용한 행위'로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본 사례의 피신청인 방송사는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다루는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호일 제작자인 신청인으로부터 호일 성분과 제작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했고, 신청인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다. 그러나 실제 방송을 본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는데, 자신은 해당 프로그램이 호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양 프로그램인 줄 알고 취재와 방송에 동의한 것이지 만약 호일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방송사가 취재원에게 프로그램 취지와 내용, 인터뷰한 내용을 어떻게 방송에서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했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으로 인격권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과거에는 묵시적 동의 등 소극적 접근법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명시적 동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언론사로서는 억울함과 취재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요의견

주요의견

오 광 건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제2세션 내용 중 우리 위원회의 손해배상 액수에 관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 신청인 측을 대변하는 토론자는 해당 언론보도로 인해 일본에서 극우 단체의 위협에 시달리는 등 신청인이 입게 된 피해에 비해 위원회의 손해배상액수가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 측 토론자는 보도내용의 공익성과 국민의 알 권리, 특히 언론의 위축효과 등을 근거로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선에서 손해배상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증거조사를 강화하고, 언론사의 규모나 보도횟수, 보도 후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을 반영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손해배상 사건 전담 중재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류 석 창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제1세션 토론 사례가 된 실제 사건에서 신청인은 고소·고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언론사 측에서는 그러한 내용의 고소·고발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보도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이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흔히 접하게 되는데, 언론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인용 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이를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고 정정보도를 허용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소문이나 풍문, 또는 제3자의 의견을 게재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기자 혹은 필자의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면 매체를 통해 일단 공표된 이상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고, 정정보

도청구 대상이 된다고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다. 비단 판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보도가 된 이상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상식적 판단이다. 일례로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언론보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면책이 된다면 앞으로 대다수 고발성 프로그램 등에서 이를 남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재 원 (제주중재부 중재위원, 제주대 통역대학원 교수)

공장을 의미하는 'Factory'는 'Fact'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흔히 우리는 'Fact'를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만든다'는 의미이고, 만드는 장소가 바로 공장이다. 이를 언론의 개념에 대입해 보면 언론사는 'Fact'를 만드는 공간이다.

다양한 음식과 식당이 인간의 먹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난 것처럼 언론과 언론사는 인간의 알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잘못된 음식이 제공되어 사람들이 이를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오늘 토론회는 언론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박 정 호 (서울 제6중재부 중재위원, 변호사)

제1세션에서 혐의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언론중재법 제17조에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사단계와 수사단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실무적으로 그 시기를 단정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러한 내사 혹은 수사 중인 사안을 보도한 경우, 당사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단순한 내사 혹은 수사 종결로 끝난 사안의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입증하기가 무척 곤란하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혐의보도에 대한 지적도 내사 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만, 언론이 혐의보도를 하는 경우 대부분 공적 인물이나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내사인지 수사인지 하는 절차적인 부분을 따지기보다 해당 사안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 학 철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제7중재부 중재위원)

피신청인 측 입장에서 항변한 토론자 중 상당수가 언론보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히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언론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피력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언론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영원한 과제이다. 획일적으로 어느 한 쪽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각종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자유로이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심도 있고 정확한 취재로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언론인의 자질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다.

강 평

강 평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육 시스템 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리걸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이 이런 점에서 좋은 교육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 패널들 모두 잘 했지만,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복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기본적인 힘이 바로 논리력이고, 법률적인 결정은 결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판단 과정이기 때문에 논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준거를 설정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공적 인물, 즉 공인이 무엇인가는 물음에 대한 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판례가 형성 중이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계속적인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형성된 공인에 대한 이론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판례를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유명인이나 공적 관심사의 중심에 있거나 관련된 인물 역시 공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왜 조정중재제도가 필요한가를 염두에 두고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는 점도 아쉽습니다. 서두에 권성 위원장께서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비록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이지만 해외 선진국에 소개했을 때 놀라움을 표시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씀하신 취지도 바로 경제성입니다. 조정중재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소송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성이므로 바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언론에 관한 문제는 헌법적 차원으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조정중재제도와 같은 특별한 분쟁해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공익과 개인의 권익에 대한 '비교형량'적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보다 개인의 인격권을 강조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언론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최대

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면 언론의 영향력이 강해진 만큼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익 침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형량'의 개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신청인에 대한 권익 침해와 함께, 과연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공익적 측면은 어떤 점인지를 좀 더 부각해 비교형량하는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토론이 이뤄졌으면 조금 더 토론의 응집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2세션 토론에서 신청인이 공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당 보도로 인해 일본에서 신청인의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공공성과 연관해 공인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매체의 속성에 따른 전파력이나 보도의 신속성 차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매체별로 전파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매체에 보도되었는가에 따라 신청인의 권익 침해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세션 사례는 경제지에, 제2세션 사례는 종합편성 채널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들 매체들이 가지는 기능을 다른 매체들이 가지는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도의 신속성은 언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간 판결을 보면 신속한 보도의 중요성을 이유로 언론의 책임을 경감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촛각을 닦는 보도에서는 충분한 확인 절차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론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내사단계에 있는 확실치 않은 사안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헌법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정학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정한 보도는 결국 인격권을 보호하는 보도가 될 것입니다. 언론은 위축효과 없이 자유롭게 보도를 하되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고, 비용이 적고 절차가 신속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ADR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제도를 나라 안팎으로 더 널리 소개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더욱 많이 개최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오늘과 같은 좋은 토론
과 학습의 기회를 주신 권성 위원장님과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가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2. 11. 9.

정 재 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